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98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2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2. 2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3. 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2005. 6.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해군 교육사령부유치단(여유기구)으로의 전환과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 우선행정 및 푸른 고성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안 제3조제2항제12호)
- 나. 환경우선 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한 「환경녹지과」를 “환경과+녹지공원과” 분리(안 제3조제2항제8호, 안 제3조제2항제9호)
- 다. 도시과+건설과 ⇒ “건설도시과” 통합개편(안 제3조제2항제11호)
- 라. 지역교육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1호)
- 마.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
- 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과표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5호)
- 사. 주민지원과(한시기구)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여유기구)으로 전환(안 제4조)
- 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담당 신설(안 제10조제17호)
- 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변경(안 제13조제2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4. 12. 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03호) 개정에 따라 2005. 6. 30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 기능 강화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환경우선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환경녹지과」에서 「환경과」를 분리하여 환경직제독립 개편, 「공공시설 관리 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기구개편과 전설과와 도시과 통합개편, 신규 수요에 따른 신규 담당 신설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관련부서 신설, 유사업무 재조정, 불합리한 직제명칭 변경 등 업무와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조례안 제4조 여유기구 명칭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다는 “지역개발추진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 답 :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에 타 지방자치 단체와 경쟁관계에서 상대적 우위 확보와 대외적 홍보로 우리군에서 꼭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고성 항공고등학교에 항공관련 전문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군정 질문을 하였는데 항공 전문대학 유치 업무와 관련된 직제는 반영되었는지?
- 답 : 기획감사실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여 교육(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장 하였습니다.

- 문 :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담당을 신설한 사유는?
- 답 :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업무 분장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 문 : 녹지공원과에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사무분장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제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는지?
- 답 :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 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장하였습니다.
- 문 : 행정과에 공무원단체 담당을 신설한 사유는?
- 답 :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공무원연수·교육·홍보 계획수립,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등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담당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3.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